

베트남 투자뉴스

제762호, '21.7.5.

kotra
하노이무역관

**VIETNAM
INVESTMENT
NEWS**



베트남 투자뉴스 제762호



안녕하십니까,

KOTRA 하노이무역관의 베트남 투자뉴스를
송부하여드립니다.

뉴스 본문은 상단의 **PDF 첨부파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762호 (7월 5일자)주요 내용은 우측
헤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3

- 베트남의 3개은행, 파산직전의 베트남항공대출 패키지제공 합의
- 베트남 항공협회, 백신여권 조기 시행 요청
-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016년 이후로 최저증가율 기록
- 베트남 21년상반기 GDP 성장률 5.64%
- 현대자동차, 자사 전기차를 활용하여 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
- 물상반기 항공 여객 운송량 19.4% 감소, 화물 운송량 12.7% 증가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5

- 베트남 LED 조명 시장 동향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6

- 금주의 통관 Q&A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7

-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 11

- 2021 6월 10일자 제47-2021/MOLISA호 공문에 첨부된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서면답변) 한글 번역본을 수록합니다. 베트남어 원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의 3개 은행, 파산 직전의 베트남 항공 대출 패키지 제공 합의

SeABank, MSB 및 SHB는 베트남의 국적기인 베트남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7,390만 달러 상당의 대출 패키지 제공에 동의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이 연체 중인 부채는 총 2억 7,130만달러에 달하며, 연체된 부채가 증가하면서 소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것으로 알려짐. 베트남 항공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항공은 MSB에 \$1,120만, SeABank에 \$2,000만, 그 외 Vietcombank, BIDV, VietinBank, Techcombank, MB 및 Eximbank등에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장기부채는 3억 9,130만 달러, 단기부채는 2억 9,6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6.24.]



자료: VIR

베트남 항공협회, 백신여권 조기 시행 요청



자료: VOV

베트남 항공협회(VABA)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국제선을 재개 해야 한다고 제안함.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Quang Ninh성 (번돈 공항)에 한해서 7월 한 달 동안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후 의무 시설 격리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발표함. 보건부에 따르면 현행 의무 시설 격리 21일, 의무 자가격리 7일의 입국 격리 방침은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한 해 의무 시설 격리 7일, 의무 자가격리 7일로 단축 될 예정임.

[Vnexpress, 6.26.]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2016년 이후로 최저 증가율 기록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41% 상승함. 이는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의 원인은 휘발유, 가스, 전기세 및 수도세 인상으로 분석됨.

[Vietnam Plus 6.29.]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21년 상반기 GDP 성장률 5.64%

베트남 통계청은 2021년 상반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5.64%라고 발표함.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성장률 1.82%에 비해 3.82%p 증가함. 농림수산업은 전체 GDP 성장률에 8.17% 기여 했으며, 산업 및 건설 부문은 59%, 서비스 부문은 32.78% 기여함.

[Vnexpress, 6.29.]



현대자동차, 자사 전기차를 활용하여 그랩과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



자료: Vnexpress

23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활용한 베트남 내 그랩 차량호출 시범 서비스의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랩과 2018년부터 협업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의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기존의 시범 운영에서 얻은 '전기차의 높은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등의 피드백들을 반영하여 개선된 전기차 및 배터리 임대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발표함.

[Vnexpress 6.30.]

올 상반기 항공 여객 운송량 19.4% 감소, 화물 운송량 12.7% 증가

2021년 상반기 베트남 공항 이용객은 2,6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반면 항공 화물 운송량은 66만 8,000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7% 증가함. 베트남 항공협회는 올해 베트남 국내 항공사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함.

[VTV 7.1.]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LED 조명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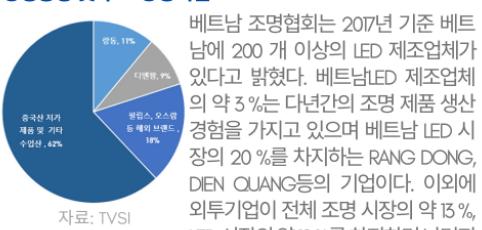
-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 정책 등으로 LED 조명 시장 지속 성장 전망 -
- 베트남 LED 조명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에너지 라벨 인증 필수 -

시장 규모



IMARC Group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LED 조명 시장 규모는 약 5억 7,000만 달러로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5개년 간 연 평균 21% 성장 할 것으로 예상했다. IMARC Group은 2024년까지 베트남의 LED조명 시장이 8억 1,82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베트남의 LED조명 보급률은 5%로서 수요의 15-20%에 불과하고 전세계 LED 조명 보급률인 6%보다 10%p 낮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조명업체 간의 가격 경쟁 심화 현상은 LED조명 제품의 베트남 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약 84%는 시장 점유율의 62%를 차지하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단순 조립하는 것이 대부분인 영세기업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주요 현지 기업

베트남 LED 조명 시장 내 유명 업체는 Rang Dong Light Source and Vacuum Flask JSC (Ralaco), Dien Quang Light Source Company, and Asled Co, Ltd 등이 있다. 이 중 베트남을 대표하는 LED조명 업체는 디엔광(Dien Quang)과 랭동(Rang Dong)이다.

▲ 외국인투자기업 생산 제품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가진 해외 조명 기업들은 Signify (Philips Lighting), Osram Light AC, Nichia Corporation, Cree Inc, Seoul Semiconductor Co Ltd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필립스와 오스람 제품은 베트남 현지 기업 제품인 Rang Dong, Dien Quang 제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 중국산 LED 제품

또한 베트남의 LED 생산 기업 양대 산맥인 Rang Dong과 Dien Quang을 제외한 베트남 내의 조명회사들 중에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저가형 LED 조명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또한 중국산 완제품이 베트남 시장으로 그대로 수입되기도 한다.

관세율 및 관련 규정

VKFTA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LED조명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LED조명은 에너지 효율 인증라벨 필수 부착 품목으로서 시행령 04/2017/QD-TTg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되었다.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담당하며 에너지 효율 표준 설정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가 담당한다. 에너지 라벨 발급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시사점

LED조명은 전력 소모가 적어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기존 형광등과 비교하여 수은 등의 중금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조명으로 여겨진다.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더불어 정부부처 및 각 도시의 공공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LED 조명 기업이 베트남의 프로젝트 성 조명 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면 좋은 진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아파트 보급률이 증가하며 LED조명은 물론 LED스마트 홈 조명의 수요도 증기할 전망이다. 휴대폰 블루투스 제어, 혹은 음성 인식 제어를 통하여 간편하게 조명을 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 홈 가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베트남도 차츰 스마트 제어 전자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 LED조명을 수출 할 경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필수이다. 현지 사정에 따라 인증정보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최신 해외인증 정보를 참고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참고: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사업 해외 인증정보 링크](#)

오는 8월에는 베트남 국제 조명 전시회인 LEDTEC 아시아 2021이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 및 참여도 가능하므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해당 전시회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 동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EDTEC 아시아 2021 - 디지털 사이니지 쇼

- (베트남 국제 LED/OLED 조명)
- 일시: 2021.08.05 - 2021.08.07
- 장소: 호찌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
- 웹사이트 링크: [HTTP://LEDTECASIA.COM](http://LEDTECASIA.COM)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TA관련 Q&A

**아세안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Q : ATIGA 협정 원산지증명서 (FORM D) 발급 시
자율발급이 가능 한가요?**

A : 베트남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ATIGA 또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인 FORM D로 원산지증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간의 별도 협약을 통해서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시범사업에 관련한 아세안 각국 정부간 양해각서가 교환되었고, 아래의 **베트남 법률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CIRCULAR PILOT PROJECT FOR SELF-CERTIFICATION
OF GOODS UNDER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No. 28/2015/TT-BCT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대하여 FORM D를 갈음하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해당 시범사업에 참가신청하고, **자율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무역거래 당사자의 지위는 1년간 유효합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



주 요 경 제 지 표

2021년 6월 15일 기준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5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5.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076	71,854.60	151	447.91	1,830.33
일 본	4,701	63,241.23	71	1,830.01	2,590.08
싱가포르	2,706	61,842.90	77	4,443.80	5,262.89
대 만	2,818	34,719.01	28	90.37	834.89
홍 콩	1,977	26,738.00	40	798.48	917.51
버진아일랜드(영)	865	22,084.09	10	78.88	151.42
중 국	3,211	19,691.24	78	599.64	1,152.79
말레이시아	652	12,980.54	4	8.60	22.58
태 국	615	12,727.17	10	55.64	176.25
네덜란드	377	10,328.73	10	86.52	141.74
미 국	1,095	9,543.84	19	148.82	182.13
전체 합계	28,093	345,751.35	498	8,588.67	13,262.61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연번	구분	2021. 5.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5. 20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323	232,778.51	215	2,571.41	6,139.42
2	부동산경영	955	61,018.88	15	4,990.52	5,426.5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66	33,733.78	19	740.17	1,049.45
4	호텔, 외식서비스	895	12,521.62	177	319.35	521.90
5	건설	1,759	10,685.21	79	47.50	320.94
6	도소매, 유통	5,342	8,835.50	17	125.59	160.59
7	물류운수	887	5,500.45	2	8.68	81.90
8	채광	107	4,894.76	47	6.89	63.31
9	교육, 양성	596	4,423.02	-	-	54.53
10	정보통신	2,369	4,026.77	7	0.72	50.46
11	농, 임, 수산	3,610	3,845.10	11	5.67	46.43
12	예술 오락	505	3,687.22	13	8.11	44.34
13	기술과학전문	138	3,393.57	1	1.01	20.1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03	10	2.03	10.8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1.73
16	행정, 지원 서비스	500	978.50	-	-	1.21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	-	1.19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0.21
19	기타산업	7	11.07	-	-	-
	합계	33,615	396,862.66	613	8,827.66	13,995.08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요 경 제 지 표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5
수 출	2,447.2	2,634.5	2,814.7	1,169.7
수 입	2,375.1	2,535.0	2,624.0	1,162.4
무역수지	72.1	99.5	191	7.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078	51,827	50,880	21,887
전기전자제품/부품	29,321	35,591	44,668	19,5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49	18,304	27,042	14,873
섬유/직물제품	30,449	32,571	29,478	12,211
신발류	16,238	18,299	16,551	8,461
원목 및 목제품	8,909	10,526	12,323	6,598
수송수단 및 부품	7,964	8,500	9,058	4,437
철강제품	4,549	4,160	3,035	3,557
수산물	8,795	8,572	8,384	3,236
원사(Yarn)	4,025	4,142	3,699	2,165
기 타	67,606	71,697	76,353	34,338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131,31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21년 5월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5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27,42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8,65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7,456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5,991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4,968
철강제품	9,896	9,485	4,526	4,647
자동차 및 부품	5,382	7,426	6,272	3,636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3,555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3,362
화학품	5,163	5,098	4,953	3,213
기 타	88,787	92,931	95,322	48,402
합 계	236,688	253,070	262,407	102,60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21년 5월 순위기준



주 요 경 제 지 표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37,438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20,283
3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8,749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8,270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4,616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3,267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2,977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2,543
9	태 국	4,786	5,494	5,272	4,917	2,507
10	영 국	5,424	5,776	5,758	4,955	2,360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30,321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104,941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21년 5월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43,790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20,966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8,839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8,458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6,438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5,430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3,503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2,933
9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2,916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2,767
	기 타	40,514	47,063	47,976	48,826	22,829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128,869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21년 5월 순위 기준



주 요 경 제 지 표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4
수 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17,094(16.1)
수 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7,974(17.0)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9,121

자료원 :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OLED	4,802(145.0)	6,373(32.7)	6,204(-2.7)	8,069(30.1)	2,735(51.7)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4,822(170.3)	5,322(10.4)	4,746(-10.8)	5,718(20.5)	1,539(-21.2)
메모리반도체	2,926(76.1)	3,506(19.8)	3,674(4.8)	3,101(-15.6)	1,467(63.2)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3,172(-36.1)	2,513(-20.8)	2,791(11.1)	3,248(16.4)	994(7.6)
기타집적회로반도체	890(42.3)	1,176(32.2)	1,345(14.3)	1,646(22.4)	567(-7.3)
인쇄회로	2,099(63.8)	1,773(-15.5)	1,586(-10.6)	1,585	476(-3.4)
기타개별소자반도체	453(3.6)	2,519(-1.2)	1,750(-30.5)	765(6.4)	304(44.4)
편직물	1,118(3.8)	731(61.4)	719(-1.7)	850(-14.6)	300(13.9)
LCD	2,550(393.8)	1,107(-1.0)	996(-10.0)	1,465(-16.2)	300(-33.4)
자동차부품	382(-13.0)	464(21.4)	649(39.9)	651(0.2)	296(89.6)
기 타	24,540	23,137	23,719	21,407	8,117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17,094(16.1)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21년 4월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2,864(38.8)	3,489(21.8)	4,087(17.2)	3,195(-21.8)	1,068(-8.8)
휴대용컴퓨터	231(152.0)	269(16.7)	342(27.2)	758(121.3)	540(211.6)
기타무선통신기기	833(151.5)	1,004(20.5)	1,087(8.3)	1,048(-3.6)	456(26.1)
기타신발	353(20.5)	453(28.2)	517(14.2)	524(1.2)	210(2.1)
스포츠화	345(28.3)	416(20.7)	437(5.0)	428(-2.0)	190(21.2)
무선풍계기	100(-35.2)	131(31.1)	256(95.0)	372(45.4)	180(42.1)
LCD TV(디지털의 것)	380(37.5)	351(-7.4)	337(-4.2)	394(16.9)	171(21.9)
언더셔츠	197(23.3)	251(27.2)	303(20.8)	262(-13.3)	159(18.6)
남성바지	305(19.2)	341(11.8)	361(6.0)	303(-16.1)	151(15.2)
기타목재류	296(16.7)	495(67.2)	377(-23.7)	352(-6.8)	136(24.9)
기 타	10,272	12,432	12,967	12,943	4,712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7,973(17.0)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21년 4월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다음 내용은 2021년 6월 10일자 제47-2021/MOLISA호 공문에 첨부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1. 한-베 전문가 MOU 효력 부활

노동보훈사회부는 상기 내용에 관한 2021년 5월 13일자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발송하였음

<대사관 추가안내> 베 정부는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통해 우리 대사관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경력 관련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단체·개인을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하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라고 함)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년수)은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경력에 대해 외국의 주재 기관·단체·기업의 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대사관 추가안내>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서도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한편, 우리대사관은 베트남기업 또는 본사가 베트남에 있는 우리기업 등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근무경력에 애로를 겪는 우리교민 지원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임(~7월초)

3. 대학졸업증명서(학위증) 관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a호에 따르면 전문가는 학위증이나 효력이 동등한 증명서 및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최소한 3년 경력을 가져야 함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전문가 증명서는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 년수 확인에 관한 외국 주재 기관·단체·기업의 문서이며, 적격한 대학졸업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과 우리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베 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는 지방 시·성에 대학학위증과 졸업증명서가 동일함을 인지하여 노동허가 등에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공문(제425/CVL-QLLD호)를 송부함(공문 및 한글번역: 첨부3 및 첨부4)

(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4.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할 기관은 기업·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용 현황, 직무, 경력에 관한 요청사항,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 불가 이유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검토 및 승인함. 따라서 각 시점에 기업·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은 기업·단체의 상황 및 해당 지역의 근로자 공급 수요 역량에 따라 다름

5.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을 소재지로 변경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d호 및 제30조제1항제a호에 따르면 정부, 정부총리, 각부처가 설립을 승인한 기업협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에서 진행하고, 성급,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이 설립을 승인한 기업의 경우 노동허가 발급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c호 및 제30조제6항제a호에 따르면 관할기관의 설립 승인을 받는 기업, 기관, 단체 대표사무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함

6. 노동허가 발급 관련 명확한 행정절차 요청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해당하는 고용 분야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1년 5월 6일자 제526/QD-BLDTBXH호 결정문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 11개를 발행하였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근로시간단축의 중복부여 여부>

1. 노동법 제137조2항에 따르면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보다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권리·이익의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매일 1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의 태아 보호를 위한 것임

2. 한편, 노동법 제137조4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생리 기간 중 1일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일 6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여성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가지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첫 12개월 간 모유수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따라서 상기 제137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두 가지의 제도·정책은 서로 다른 것임.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이 두 가지 제도·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노동법안 수립 과정에서 상기 규정은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 기업, 관련 개인·단체의 컨센서스·지지를 받았음.

<퇴직금 관련>

1. 필수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납부 일시 중단 및 감면에 관한 법률 규정

1.1. 사회보험 필수 가입은 사회보험법 규정 및 안내문에 따라 이행되며 그 중 필수적 사회보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만 있음**(사회보험법 제88조 및 필수적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1일자 제115/2015/ND-CP호 시행령 제16조 참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방안에 관한 2020년 4월 9일자 제42/NQ-CP호 의결을 발행하였고 **동 의결 내용 중 목록 II 1호에는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42/NQ-CP호 의결 이행 안내를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납부 일시 중단 안내에 관한 2020년 5월 4일자 제1511/LDTBXH-BHXH호 공문을 발행하였음. 동 공문 목록 4 제b호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 시 납부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함

현재, 병가·출산·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음
1.2. 실업보험 가입은 고용법 규정 및 이행 안내문에 따라 이행됨. 동 문서에는 실업보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실업보험 감면에 관한 공문 등이 없음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에 관한 법률 규정

노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 근무한 총 기간에서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실업보험 납부기간 및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뺀 기간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사업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중단은 노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3.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노동법 및 이행 안내문에는 인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도제훈련·인터십 및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61조 및 제62조)이나 수습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만 있음.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국은 의견이 없음

<대사관 추가안내> 2021.2.1.부터 시행되는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제145/2020/ND-CP호) 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총 근무기간에 삽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있었음. 개정법령 시행(2021.2.1.)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베트남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 추가안내하도록 하겠음

4.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 관련

양측은 동 협정 준비·협상 과정 내내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가장 조속한 시일 내 내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사관 추가안내> 외국인의 의무적 사회보험 관련 시행령(제143/ 2018/ND-CP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중 퇴직연금계정(사용자 14%, 근로자 8%)은 2022.1.1.부터 적용될 예정임. 우리정부는 ①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 납부 면제, 즉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근로자의 베트남 퇴직연금 납부 면제(중복가입 배제)와, ②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연금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현재 베트남 총리 보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체결을 위한 베트남 내부절차는 국회상무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음

원문 보기 클릭



노무관련문의: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참사관)
(+84)4-3831-5111, jglee19@mofa.go.kr